

대여학자금 부담금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
사업위치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
총사업비	총 (국비) (사비) (보조율) (구비) 19,539천원 19,539천원 0%
사업내용	○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 및 해외대학 등록금 지원
사업형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직접수행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치단체 보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출연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위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
사업시행주체	서울특별시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
신규	계속	투자심사	학술용역	기술심사	자방보조심의	정보화심사	공유재산	안전예산	출자·출연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
경상	투자					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행정국	인력개발과	김희갑 2133-5750	김지형 2133-5775	황수영 2133-5779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5년 예산액	2016예산액 (A)	2017예산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				(x-)
계	(x-) 31,834	(x-) 18,445	(x-) 19,539	(x-) 1,094	(x-) 5
공무원연금관리 공단경상전출금	(x-) 31,834	(x-) 18,445	(x-) 19,539	(x-) 1,094	(x-) 5

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
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	○ 대여학자금부담금 = 19,539천원

3 사업 설명

사업목적

- 공무원연금법상 법정 부담금으로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공무원 본인과 자녀에 대하여 무이자로 대부하여 일시적으로 집중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

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 : 「공무원연금법」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72조

사업내용

- 대 상 :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공무원 및 대학생 자녀
- 규 모 : 약 4,500건/년
- 사업기간 : 2017. 1. 1.~12.31.
- 사업내용 :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 및 해외 대학 등록금 지원
- 총사업비 : 19,539천원

사업추진절차

- 집행절차 : 지자체 부담금 납부 →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수합 → 공무원자녀 대부

2017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9,539	
대여학자금부담금	2017.01~2017.12	19,539	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고지한 부담금 납부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4년도	○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	12,919천원 집행
2015년도	○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	31,834천원 집행
2016년도	○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	8,738천원 집행

□ 향후 기대효과

- 공무원 본인과 자녀에 대하여 무이자 대부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3	(x-) 4,282,520	(x-) 0	(x-) 0	(x-) 4,282,520	(x-) 4,282,520	(x-) 0	(x-) 0
2014	(x-) 12,919	(x-) 0	(x-) 0	(x-) 12,919	(x-) 12,919	(x-) 0	(x-) 0
2015	(x-) 31,834	(x-) 0	(x-) 0	(x-) 31,834	(x-) 31,834	(x-) 0	(x-) 0

참 고 자 료

□ 2017년 부담금 예산요구액(공단)

예산요구액(상세)

출력일시: 2016/10/19 16

□ 예산 편성년도: 2017

(단위: 천원)

부담기관코드	500009	부담기관명	서울특별시	회계코드	F53
2017년 대부예상액(A)		11,779,010	2017년 상환예상액(B)		14,737,099
2016년 정산예상액(C)		6,313,382	예산요구액(D=A-B-C)		0
운영부담금(E)		19,539	최종부담금 예산요구액(D+E)		19,539

※ 최종부담금 요구액은 기획재정부에서 '정책조정'한 금액으로 산식과 다를 수 있음

□ 세부내역

○ 2017년 대부예상액(A) 산출내역

연도	2015년(실적)	2016년(예상)	2017년(예상)
대부인원	3,980	4,240	3,698
대부금액	13,515,770	13,313,600	11,779,010

※ 대부인원: 신규대부인원증감률 및 대부종료를 적용

※ 예상등록금: 2017년 평균 등록금 단가(3,185천원) 2016년 1학기 등록금 평균 증가율(1.40%) 적용

○ 2017년 상환예상액(B) 산출내역

연도	2015년(실적)	2016년(예상)	2017년(예상)
상환액	15,646,427	14,176,326	14,737,099

※ 재직중 상환, 연금부활상환, 퇴직으로 인한 퇴직공제 예상액으로 구분하여 산정

○ 2016년 정산예상액(C) 산출내역

전전년도 미결제(2015)	대부예상액(2016)	상환예상액(2016)	부담금(2016)	전년도 정산예상액(2016)
(a)	(b)	(c)	(d)	(a+c+d-b)
5,450,656	13,313,600	14,176,326	0	6,313,382

※ 부담금 2016 (d)의 (-)금액은 잉여금 반환 금액임

○ 운영부담금(E) 산출내역

-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를 부담기관별 대부액에 비례하여 산정(공무원연금법 제 72조)

총대부예상액(A)	부담기관 대부예상액(B)	대부점유율(B/A)	운영부담금
503,376,510	11,779,010	2.34%	19,539

※ 운영부담금 = 대여학자금 운영경비 예산(835,000천원) × 대부점유율

공무원연금공단

1/1

보고서ID: PdbPnNbBdamtBdgFom